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16 - 39 - 141호

안 건 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사실조사를 거부·
방해한 위반행위에 관한 건

피 심 인 ① ㈜LG유플러스 (대표이사 권영수)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(한강로3가)
사업자등록번호 220-81-39938

② [REDACTED]
[REDACTED]
[REDACTED]

③ [REDACTED]
[REDACTED]
[REDACTED]

④ [REDACTED]
[REDACTED]
[REDACTED]

의결연월일 2016. 7. 8.

주 문

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피심인① : 7,500,000원

피심인② 내지 ④ : 각 5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사실관계

1. 조사 대상

- 피심인① (주)LG유플러스(이하 “피심인①”) 법인영업 부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“단말기유통법”) 위반 관련 사실조사 절차를 피심인① 및 그의 임직원이 거부·방해하였다.

2. 조사 배경

- '16년 초부터 법인영업 등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과열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1차 실태점검('16. 2. 15. ~ 3. 31.)을 실시하였다.
- 그 결과 이동통신 2사에 대하여는 실태점검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서 2차 실태점검('16. 4. 1. ~ 6. 30.)을 실시하던 도중에 피심인①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*가 현저하여 '16. 6. 1.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하였다.

* SKT : 28건, KT : 11건, 피심인① : 1,546건

- 조사관이 사실조사 첫날인 '16. 6. 1. 피심인①의 본사를 방문하여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, 이에 응하지 않고 사실 조사를 거부·방해 한 사실이 발생하였다.

3. 주요 사실관계

1) 기초사실

- o 피심인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가입자 수는 11,949천여명으로 20.5%('15. 12월말 기준), 매출액은 5조 2,980억원('15.12월말 기준)으로 21.0%의 이동전화 서비스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.
- o 피심인① 본사 법인영업 부문의 사실조사에 응대한 피심인②, ③, ④는 각각 법무담당 전무(피심인②), 공정경쟁담당 상무보(피심인③), 기업모바일정책 팀장(피심인④)의 직책으로서 심결일 현재까지 모두 피심인①의 임직원으로 근무중이다

2) 행위사실

- o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.
- o (사실조사 1일째) 조사관이 '16. 6. 1. 오전 10시 50분경 피심인① 본사를 방문하여(본사 건물 지하2층 회의실로 안내받음) 피심인 ③, ④에게 공문서 제시와 함께 조사목적, 이유, 대상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즉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.
- 당시 피심인 ③, ④는 자료제출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당일 오후 4시까지는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으나, 오후 6시가 지나도록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,

- 오후 6시 15분경 조사관이 철수하는 도중에 '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제공, 조사개시일 7일전 통보 등이 선행되어야 조사에 응할 수 있다'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.
- o (사실조사 2일째) 조사관이 '16. 6. 2. 오전 9시 45분경 피심인①의 본사를 재차 방문(본사 건물 지하 2층 회의실로 안내받음)하여, 조사대응 대표자임을 자칭하는 피심인②에게 즉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였다.
- 피심인②는 자신의 회사에서 전일 제출한 문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.
- 조사관은 피심인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'조사 거부·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'을 통보하고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, 피심인②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오전 10시경 철수하였다.
- 한편,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①이 사실조사 1일째 제출한 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조사 2일째인 '16. 6. 2. 오후 4시 47분경 '단말기유통법 제13조에 근거한 사실조사'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.

※ 사실조사 2일째 피심인③, ④는 피심인②와 동석하여 보조적인 응대를 함

- o (사실조사 3일째) 조사관이 '16. 6. 3. 오후 12시 30분경 피심인①의 본사를 다시 방문하였고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절차는 원만하게 진행되었다.
-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'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발송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.

3)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 요지

- o 피심인들이 '16. 6. 30.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요지는 단독조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,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조사응대가 지연되었다는 것이다.

II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은 (i)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(ii) 같은법 제3항은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·이유·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나,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(iii) 위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.

<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>

제13조(사실조사 등)
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(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, 대리점,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·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·이유·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(과태료)

-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위법성 판단

- 피심인들이 '16. 6. 1. ~ 6. 2.간 단말기유통법 제13조(사실조사 등)에 따른 조사에 대해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,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사실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,
- 조사관이 공문서 제시와 함께 구두로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던 점,

- 피심인들이 사실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자료들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점 및 불법지원금에 대한 사실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단말기 유통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조사계획을 현장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왔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,
- 단말기유통법 제13조(사실조사)제2항에 따른 적법한 사실조사를 거부·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.

III. 과태료 부과

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.

1. 기준금액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3]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처음 일어난 것으로서 '1회 위반'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구분	과태료 금액(만원)			
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
너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	-	500	1,500	3,000	5,000

2. 추가적 가중 및 감경

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시행령 [별표3] 1. 일반기준 다.의 가중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한다.

< 근거 조항 >

단말기유통법시행령 [별표 3]

1. 일반기준

다.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2)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최종 과태료

이에 따라, 피심인들의 조사거부·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①에 대하여는 기준 금액에 2분의 1을 추가 가중한 금액인 7,500,000원을, 피심인② 내지 ④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인 5,000,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.

V. 결론

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위원장

최 성 준



부위원장

김 재 홍



위원

김 석 진



위 원 이 기 주



위 원 고 삼 석

